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
관한특별법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2호, 2023. 12. 26. 제정,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연도별 사업계획 작성 시 필요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안 제2조)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인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인 8개 시·도, 27개 시·군·구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로 정함

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시·도 발전계획안 및 발전종합계획안의 수록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기간, 공청회 개최 시 필요 절차,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기초조사 등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정함

다.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연도별 사업계획안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기한 및 작성사항, 관계 기관과의 협의,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의 고시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정함

라. 지원부서 등의 설치·운영(안 제8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부서의 장 및 구성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파견 등 지원부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에 참석 가능한 이해관계자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바. 사업시행자의 요건 및 사업의 시행승인, 준공검사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요건, 사업승인 시 고려사항, 사업(변경)승인·준공검사 시 제출 서류 및 고시사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요건과 절차, 서식을 정함

사.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안 제15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 시 고려요인 및 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고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

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범위 및 지방교부세 지원 범위를 정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대한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에서의 완화되는 행위제한 사항을 구체화함

자. 출입·검사 공무원증(안 제19조)

사업승인권자의 소속 공무원이 사업시행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서식을 정함

차. 승인 취소 등의 공고(안 제20조)

승인 취소 또는 효력 정지 등 처분 시 고시사항 및 방법을 정함

카.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유성구, 대덕구
2. 세종특별자치시
3. 경기도: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영월군
5.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6. 충청남도: 천안시, 금산군
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8. 경상북도: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관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해당 시·도지사 관할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속하는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할 사업의 개요(사업규모, 시행기간,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다) 및 투자계획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발전종합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제출되는 발전종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사업 간의 유기적 관련성
2. 사업별 우선순위 및 시행순서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내용(협의를 종료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및 이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청회의 개최)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시·도발전계획안의 개요 및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해당 시·도 단위로 개최하여야 하며, 시·도발전계획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군·구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지역에서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시·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사항과 관계되는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시·도발전계획안에 추가로 포함하려는 사항의 개요 및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개별 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사회문화·관광 자원·관광시설 현황, 자연환경의 보전실태, 토지의 이용 현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

3. 그 밖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할 때 조사·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획안(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안”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에 관한 설명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3.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결과 분석
4. 사업별 자금조달계획
5. 사업비 명세
6. 사업시행 기간

7. 사업의 효과

8.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시·군·구의 재정 현황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시·도,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 개별 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

을 변경하는 경우

제8조(지원부서 등의 설치·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부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부서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설치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련 시·도 지사가 되며, 협의회는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련 시·도의회의 의장

2. 관련 시·도의 지방연구원 원장

3.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과학기술, 행정·재정, 환경,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관련 시·도별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하고, 의장은 개최지의 시·도지사가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사업의 시행

제12조(사업시행자) 법 제13조제5호의 “공공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도별 사업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
3.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사업시행자(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다른 시·도의 관할에 속하

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 중 관할 행정구역이 가장 넓은 시·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가 된다. 이 경우 사업승인권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명칭, 필요성,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시행 기간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도 및 관계 도면
3. 사업비의 규모 및 채원조달방법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
5. 사업시행 지역에 위치한 토지 등의 매수·보상 등에 관한 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
6.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 계획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포함

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⑤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투자능력

가.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나.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소유 현황 및 개발·이용권의 확보 가능성

2. 투자재원의 확보

가. 투자비 총액 중 자기자본의 비율 및 조달계획의 적정성

나. 자기자본과 유입자본의 비율 및 부채비율의 적정성

3. 환경오염의 방지대책

가. 사업시행 지역 및 인근 지역 자연환경 보전 대책의 적정성

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연환경 복원·복구의 적정성

4. 그 밖의 사항

가.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주민의 고용 및 관련 산업 진흥에 대한 기여도

⑥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 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5. 사업시행 기간

6. 토지 등의 세부목록

⑨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승인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⑩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제8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그 사업승인권자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4조(준공검사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시·도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소유자별 면적 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 대조도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5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3. 철도·도로·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
4. 지역 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국고보조율)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제17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 연계발전지구에 포함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6장 보칙 등

제19조(출입·검사 공무원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승인 취소 등의 공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사업승인권자가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과태료)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연도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안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기한은 발전종합계획 수립 이후부터 적용한다.

법 제19조에 따라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18조 관련)

시설구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1. 공공편익시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광장 바. 그 밖에 도로, 공원, 관공서, 금융기관,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정류장, 전기시설 등 공공의 편익과 관련되는 시설
2.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3. 상가시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사진관, 표구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마. 그 밖에 위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4. 운동오락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 마. 그 밖에 컴퓨터게임장, 어린이놀이터, 번지점프 등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5. 휴양문화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동·식물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에 따른 야외음악당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나목에 따른 야외극장 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시설 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차.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낙시터 카. 그 밖에 정자,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자연학습장, 온천장 등 휴 양 및 문화와 관련된 시설
6.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물류·유통 관련 시설 등 중부내륙연계발전 지구 내 설치시설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시설
7. 기타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8호, 제9 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의 2호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비고. 사업시행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령 위반상태인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180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70만원	120만원	200만원

사업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구역	위치	시행면적 m ²	
	사업목적		
사업계획	사업개요		
	시행기간		
	자금계획(천원)		
	총액: 국내자본: 외국자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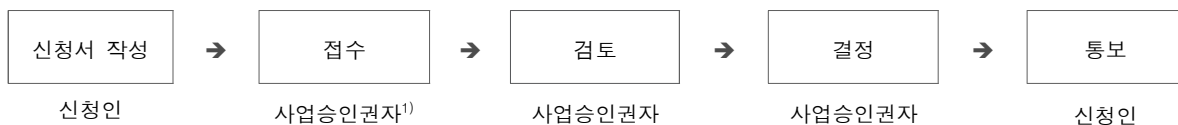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포함)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¹⁾법 제14조 제1항의 사업승인권자를 말한다.

변경 승인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계획	사업위치		
	사업목적		
	사업개요		
	시행기간		
변경내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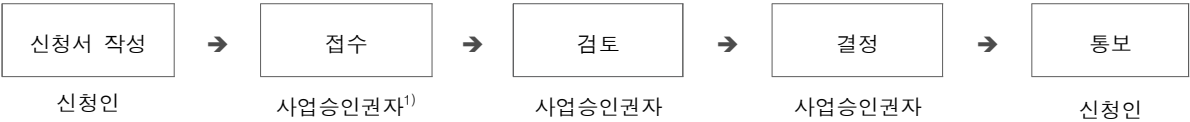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계획서 첨부(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사항 포함)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¹⁾법 제14조 제1항의 사업승인권자를 말한다.

공사완료보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보고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보고내용	구역명					
	지정목적					
	위치					
	면적			시행기간		
		㎡		. . . ~ . . .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 계획	시설명					
	개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 소유자별 면적 조서 4. 공동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 · 구 지적 대조도	수수료 없음
------	---	--------

제 호

준 공 검 사 증 명 서

성 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사 업 명:

위 치:

시 행 면 적: m²

준공 연월일: . . .

준 공 명 세: (별첨)

귀하가 시행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검사를 하고 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앞쪽)

제 호
출입 · 검사 공무원증
사 진 3.5cm × 4.5cm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55mm × 85mm [보존용지(1종) 120g/㎡]

(색상: 하늘색)

(뒤쪽)

출입 · 검사 공무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1. 이 사람은 중부내륙연계발전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연 락 처	(044) 205 - 3424